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구분	분양신청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 자로 신청	권리신고(권리종류별)			
		소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소계	압류	가처분	근저당
	신청 인	423	388	24	11	81건 (184인)	402	9	1	392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	권리 자별	대상		분양			청산	수용	보상의 협약	그 밖의 분
	계	491	423	417	상가 24 (중복18)	그 밖의 도				
	토지및 건축물 소유자	424	388	382	24 (중복18)					
	토지 소유자	44	24	24						
	건축물 소유자	23	11	11						
소유권 외의 권리	대상	402건		이전 설정	건		해지 또는 소멸		건	
세입자 대책	대상	440	임대주택 공급		211	주거이전비 지급	229	비대책		
정비 기반 시설	신설					용도폐지				
	종류	명칭	규모	설치 비용 (천원)	관리청	종류	명칭	규모	국공유지 (㎡)	무상양여 (㎡)
	도로	도로	2,296.3	211,000		도로	현황도로	9,830.0		9,502.0
	공원	가로 공원	2,517.0	255,000						
공원	어린이 공원	1,705.0	295,000							
평가액 또는 추산액	시행전					시행후				
	계	토지	건축물		계	대지	건축물			
	221,320,057,946	193,221,059,000	28,098,998,946		701,989,163,150	건축물에포함		701,989,163,150		
자금 운용	총 소요사업비	524,158,496,590			수입 추산액	701,989,163,150				
<p>이 인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동구청장 인</p>										
									수수료	
									없음	

※ 인가안내

1.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그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명기하여 인가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
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관리처분계획 인가내용에 의한 대지 및 건축시설별 후속 처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관계 법령과 해당 시설의 처분에 관계되는 다른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4.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자는 공사완료고시전에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구청장이 투기방지를 위하여 권리변동신고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공사완료고시 후 행하는 이전고시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대로 하여야 합니다.